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공 보

**제542호 2016. 6. 22 (수)**

선 결	기관의 장

## 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6 - 59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7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..... 3

거창군 고시 제2016 - 60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40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..... 6

거창군 고시 제2016 - 61호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(선도지구)사업 기본계획 승인고시 .. 11

거창군 고시 제2016 - 62호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13

## 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6 - 652호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..... 15

거창군 공고 제2016 - 659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..... 26

거창군 공고 제2016 - 660호 '16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..... 28

거창군 공고 제2016 - 668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..... 38

이 상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##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7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거창군 고시 제2008-43호(2008.09.17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7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
2016. 06. 16.

### 거 창 군 수

#### 1. 사업 개요

종류	명 칭	위 치		시 행 규 모						시 행 구 간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읍·면	리	등급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면적 (㎡)	시 점	종 점		
교통 시설	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설도로공사 (군도16호선)	신원면	덕산	중로	3	17	1,145	12	43,763	신원면 덕산리 산188	신원면 덕산리 359-3	거창군 고시 2008-43호 (2008.09.17)	사업기간 변경

#### 2.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

- 주 소 :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
- 성 명 :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장

#### 3. 사업기간

- 당 초 : 2011.11.04 ~ 2015.12.31
- 변 경 : 2011.11.04 ~ 2016.12.31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 : 붙임  
(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)
5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(☎055-940-55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

연번	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군	면	리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명	주소	성명	
1	거창	신원	덕산	산187-6	도로	30	30		거창군				
2	거창	신원	덕산	산188	도로	397	397		거창군				
3	거창	신원	덕산	산187-4	도로	494	494		거창군				
4	거창	신원	덕산	1526-1	도로	840	840		국(건설부)				
5	거창	신원	덕산	1389-1	도로	111	111		거창군				
6	거창	신원	덕산	1388-2	도로	598	598		거창군				
7	거창	신원	덕산	산189-4	도로	830	830		거창군				
8	거창	신원	덕산	1388-1	도로	6	6		거창군				
9	거창	신원	덕산	산189-5	도로	131	131		거창군				
10	거창	신원	덕산	1525-1	구거	272	272		국(농림수산부)				
11	거창	신원	덕산	1400-4	도로	309	309		거창군				
12	거창	신원	덕산	산191-4	도로	308	308		거창군				
13	거창	신원	덕산	1499-1	구거	243	243		국(농림수산부)				
14	거창	신원	덕산	359-3	도로	383	383		거창군				
15	거창	신원	덕산	산187-8	임야	756	756	진주시 동성동 201송병문	송병문				
16	거창	신원	덕산	산187-7	임야	238	238	진주시 동성동 201송병문	송병문				
17	거창	신원	덕산	1389-3	답	744	744	부산시 남구 광안동 497-20	김한욱				
18	거창	신원	덕산	1388-3	답	1,504	1,504	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355	김성욱				
19	거창	신원	덕산	산189-6	임야	1,388	1,388	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19-3 동방아파트 6-304	김진우				
20	거창	신원	덕산	1399-2	답	76	76	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295-14	김태웅				
21	거창	신원	덕산	1400-3	답	822	822	거창읍 상림리 800 이스타빌딩 5층	김수봉				
22	거창	신원	덕산	1399-1	답	118	118	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295-14	김태웅				
23	거창	신원	덕산	산189-7	임야	506	506	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-232 금호파크빌 -202	김수근				
24	거창	신원	덕산	산214	구거	67	67		국(농림수산부)				
25	거창	신원	덕산	산195-2	임야	850	850	덕산리 552	변중한				
26	거창	신원	덕산	산191-2	임야	5,565	5,565	덕산리 552	변중한				
27	거창	신원	덕산	산193-4	임야	3,296	3,296	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1235	김해김씨상현파안의대중중				
28	거창	신원	덕산	산195-3	임야	2,505	2,505	덕산리 552	변중한				
29	거창	신원	덕산	산197-3	임야	4,998	4,998	진주시 상봉동 759 삼영아파트 1동 501호	변정규				
30	거창	신원	덕산	산198-4	임야	2,720	2,720	북상면 소정리 680	담양전씨소정인당공파중중				
31	거창	신원	덕산	산197-5	임야	978	978	덕산리 561	김두회				
32	거창	신원	덕산	산199-4	임야	3,340	3,340	서울 동대문구 목동 233-70	남정태				
33	거창	신원	덕산	산200-3	임야	2,123	2,123	서울특별시 종로구 종화동 450 한신아파트 109-1708	남정태				
34	거창	신원	덕산	산47-1	임야	388	388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5-12 리마빌 시-203	박정식				
								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56-5	박윤선				
								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55-46 신현대빌라트 1-201	김현민				
35	거창	신원	덕산	396-1	전	63	63	거창읍 중앙리 342-8	황화순				
36	거창	신원	덕산	361-1	전	482	482	덕산리 529	김타관				
37	거창	신원	덕산	360-1	전	369	36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1 무지개마을 513-1603	서영환				
38	거창	신원	덕산	산48-4	임야	3,063	3,063	거창읍 중동 1192	조판술				
39	거창	신원	덕산	산45-6	임야	1,834	1,834	서울 마포구 서교동 347-14	이우대				
40	거창	신원	덕산	359-2	전	11	11		박희조				미등기
41	거창	신원	덕산	산45-8	도로	7	7		거창군				

거창군 고시 제2016 - 60호

##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40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거창군 고시 제2011-81호(2011.11.04)로 최초 실시계획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4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6. 16

### 거 창 군 수

1. 사업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86-4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) 종류 :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)사업

나) 명칭 : 가북지구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도로 공사

3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

종류	명 칭	위 치	시 행 규 모						시 행 구 간		최초결정일	비 고
			등급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면적 (㎡)	시 점	종 점		
교통 시설	가북지구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도로 공사	가북면 박암리 686-4번지 일원	중로	3	40	1,257	12	27,075	가북면 몽석리 686-4	가북면 몽석리 1197-2	거창군 고시 2008-43호 (2008.09.17)	사업기간 변경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)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

나) 성명 :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장

5. 사업기간

○ 당초 : 2012.12.14~2015.12.31

○ 변경 : 2012.12.14~2016.12.31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 : 붙임
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건설과 및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

연번	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군	면	리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명	주소	성명	
1	거창	가북	박암	690-3	도로	576	77	대구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23 비23	김상철				
2	거창	가북	박암	690-2	도로	3,467	888		거창군				
3	거창	가북	박암	686-4	전	235	227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4	거창	가북	박암	684-1	대	195	195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5	거창	가북	박암	683-3	대	220	220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6	거창	가북	박암	683-1	도로	9	9		거창군				
7	거창	가북	박암	1317	도로	4,671	196		국(건설부)				
8	거창	가북	박암	683	대	135	135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	한국농어촌공사				
9	거창	가북	박암	산142-1	임야	67	67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	한국농어촌공사				
10	거창	가북	박암	산143-1	임야	326	326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	한국농어촌공사				
11	거창	가북	박암	682	대	430	430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	한국농어촌공사				
12	거창	가북	박암	681	대	231	231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13	거창	가북	박암	680	대	436	333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14	거창	가북	박암	산144	임야	1,869	1,132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15	거창	가북	박암	산145-3	도로	24,314	8,984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16	거창	가북	박암	산145-5	도로	689	689		거창군				
17	거창	가북	박암	산145-7	임야	654	35	부산 동래구 사직동 시영 21-303호	박종한				
								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04	박성기				
								부산 동래구 노포동 783	박종만				
								거창읍 하동 338-5	박금봉				
								가북면 박암리 619	박문규				
								거창읍 하동 350-1	박철홍				
								부산 북구 주례2동 82-2	박해상				
가북면 몽석리 1669	박인기												
18	거창	가북	박암	산145-8	임야	2,745	2,661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19	거창	가북	박암	산148-3	도로	77	61		거창군				
20	거창	가북	박암	산148-4	도로	210	206		거창군				



연번	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군	면	리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명	주소	성명	
21	거창	가북	박암	산148-5	도로	238	211		거창군				
22	거창	가북	박암	산153-6	도로	296	289		거창군				
23	거창	가북	박암	산153-7	도로	816	37		거창군				
24	거창	가북	박암	산103-3	유지	35,088	761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25	거창	가북	몽석	1723-1	도로	109	83		거창군				
26	거창	가북	몽석	1723-2	도로	33	28		박능술				미등기
27	거창	가북	몽석	산79-3	도로	3,138	1,006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28	거창	가북	몽석	산79-2	도로	99	92	전북 남원시 남원면 천거리	천덕원				
29	거창	가북	몽석	산80-2	도로	496	496	거창군 남하면 둔마리	김경호				
30	거창	가북	몽석	1944	도로	2,757	591		국토해양부				
31	거창	가북	몽석	1708-2	도로	53	24		김상기				미등기
32	거창	가북	몽석	산81-3	도로	397	372		김진기				미등기
33	거창	가북	몽석	1153	전	397	38	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756	김진희				
34	거창	가북	몽석	1153-1	도로	23	23		거창군				
35	거창	가북	몽석	산81-13	임야	75	75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	한국농어촌공사				
36	거창	가북	몽석	1154-1	전	198	48	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566	김진호				지분 3분의1
								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234	김종현				지분 3분의1
								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530	김종희				지분 3분의1
37	거창	가북	몽석	1154-2	도로	172	172		거창군				
38	거창	가북	몽석	산81-9	도로	20	20		거창군				
39	거창	가북	몽석	산81-12	임야	268	268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	한국농어촌공사				
40	거창	가북	몽석	산81-2	도로	198	177		김진기				
41	거창	가북	몽석	산81-5	도로	292	292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42	거창	가북	몽석	산81-8	도로	107	107		거창군				
43	거창	가북	몽석	산82-1	도로	153	153		거창군				
44	거창	가북	몽석	산82-3	임야	252	252	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0	김동도				
45	거창	가북	몽석	1159-2	도로	1,956	1,956		거창군				
46	거창	가북	몽석	1159-3	전	77	22		경상남도				
47	거창	가북	몽석	1156-4	전	37	33		김보권				미등기
48	거창	가북	몽석	1158-3	도로	15	15	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493	김영수				

연번	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군	면	리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명	주소	성명	
49	거창	가북	몽석	1158-4	전	157	157	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0-2	김영수				
50	거창	가북	몽석	산82-2	임야	175	175	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0	김동도				
51	거창	가북	몽석	1179-1	답	60	60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52	거창	가북	몽석	1179-3	대	22	22		경상남도				
53	거창	가북	몽석	1181-1	답	436	340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한국농어촌공사				
54	거창	가북	몽석	1180-1	임야	53	53	거창군 가조면 사병리	변희석				
55	거창	가북	몽석	1180-3	전	238	238		경상남도				
56	거창	가북	몽석	산92-2	도로	198	198		김대기				매등기
57	거창	가북	몽석	산92-3	도로	416	380		거창군				
58	거창	가북	몽석	산92-4	임야	120	120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	한국농어촌공사				
59	거창	가북	몽석	1197-2	도로	755	577		거창군				
60	거창	가북	몽석	1925	하천	73,894	12		국(건설부)				

##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(선도지구)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『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사업시행지침서』에 의거 ‘15년 착수한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(선도지구)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,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16일

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명 : 거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(선도지구)사업
2. 사 업 목 적 : 도·농복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·문화 중심 인프라 구축, 배후마을과 공유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, 농업·농촌을 주제로 한 교육·문화도시로의 브랜드 강화
3. 사 업 구 역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, 중앙리, 상림리 일대
4. 사 업 규 모 : 법정리 3개, 행정리 9개
5. 면 적 : 56.30 km<sup>2</sup>(중심지 11.03 km<sup>2</sup>, 배후마을 45.27 km<sup>2</sup>)
6. 세 대 수 : 총 16,023세대(중심지 6,706세대, 배후마을 9,496세대)
7. 사 업 비 : 8,000백만원(국 5,600, 도 720, 군 1,680)
8. 사 업 량
  - 가. 기초생활기반확충 : 거창 야고라, 공동체 마당, 청소년발전소 ‘청
  - 나. 지역경관개선 : 아카데미파크웨이 조성 (대성고거창교, 2.44km 보차도 확장)
  - 다. 지역역량강화 : 거창한 공동체 교류 활성화 기획 및 운영, 공동체 교육·농업 문화 활성화 지원, 함께사는 마을 만들기 학교운영, “같이路”캠페인 운영, 거창한 농업교실 운영, 액션네트워크 운영 및 역량강화

9. 사업 효과 :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교육·문화 서비스 균등화, 교육도시 거창 브랜드 가치 제고, 공동체 사업 추진 역량 증대, 거창읍 중심지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대, 인구유입 기대 및 인근지역 거점 기능 확대, 거창읍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
10. 사업 기간 : 2015년 ~ 2018년(4년간)
11. 시행자 : 거창군수
12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: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.
13.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창조산업과 향노화산업담당(☎ 940-3732)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16 - 62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6. 24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-16 외 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○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
1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29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170-17	2009-12-28	2016-06-24	지명(덕유산+월성계곡) 활용
2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55-1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무월1길 99	2009-04-01	2016-06-24	무월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
3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002-1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남불1길 104-50	2009-04-01	2016-06-24	마을이 생길때까지 강남사가 있었다 하 여 붙여진 옛지명을 반영한 첫번째 도 로
4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713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453-6	2009-12-28	2016-06-24	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 한 도로
5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806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198-142	2009-12-28	2016-06-24	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
6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88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236-108	2009-12-28	2016-06-24	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
7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67-75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1-310	2009-04-01	2016-06-24	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 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
8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18-2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부산2길 91-10	2009-04-01	2016-06-24	옛날 무학대사가 지형이 가마솥설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
9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74-43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-16	2009-07-02	2016-06-24	행정구역명(수동면+남상면) 활용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변경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변경사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
1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32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3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30-7	2009-12-28	2016-06-24	도로명주소 변경(분리)

## 「거창군 공인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공인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20일

거창군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공인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군수 직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
- 공인의 모양,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함

3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

4. 소요예산 : 해당사항 없음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**2016년 7월 10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행정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○ 주소 : (우670-807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(행정과)

○ 전화 : 055-940-3192, 팩스 : 055-940-3169, 이메일: [pressp@korea.kr](mailto:pressp@korea.kr)

붙 임 「거창군 공인조례」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


##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6. .
제 출 자	행정과장

### 1. 제안이유

- 군수 직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
- 공인의 모양,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공인의 종류별 규격 변경(안 제4조)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5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인의 종류별 규격을 별표와 같이 변경

#### 나. 공인의 인영 사항을 변경(안 제5조)

- “한글전서체”를 “한글”로 변경하여 인영 선택의 폭을 넓히고
- “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”를 추가함
- ※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8조 반영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제40조, 제35조, 별표  
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8조

####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##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

#### 라. 그 밖에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:
  - (가) 예고기간:
  - (나) 예고결과:
- (4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- (5) 성별영향분석: 성별영향분석의뢰(여성아동담당) 및 결과반영여부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사무관리규정」 제41조”를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”를 “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제12조, 제13조 조제목 및 본문, 제14조, 제15조제1항, 제15조의2제2항 중 “관수자”를 “보관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별지 제6호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 하고, 제15조의2제3항 중 “별지 제7호서식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6조(준용)**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사무관리규정</u>」 제41조에 따라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, 규격, 등록, 공고 및 보관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「<u>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</u>」 제40조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위임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</p>
<p>제5조(인영의 내용 및 색깔) ① 공인의 인영은 <u>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</u>,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</p>	<p>제5조(인영의 내용 및 색깔) ① ----- <u>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</u>, ----- -----</p>	<p>○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8조 규정 반영</p>
<p>② ~ ④ (생략)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2조(공인의 사고보고 등) 공인 <u>관수자</u>는 공인의 도난, 분실, 허위,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<u>별지 제6호서식</u>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12조(공인의 사고보고 등) -----<u>보관자</u>----- ----- <u>별지 제4호서식</u>----- -----</p>	<p>○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춰 용어 순화함.</p> <p>○ 서식 순번 정비</p>
<p>제13조(공인 관수자) 공인의 종류별 <u>관수자</u>는 별표 2와 같다.</p>	<p>제13조(공인 보관자) -----<u>보관자</u>----- -----</p>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제14조(공인의 보관)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,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<u>관수자</u>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 공인(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날인은 공인 <u>관수자</u>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시행문,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, 임용장·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찍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의2(인영의 인쇄사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 <u>관수자</u>와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<u>별지 제7호서식</u>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공인의 보관) ----- ----- -----<u>보관자</u>----- -----</p> 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----- ----- <u>보관자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의2(인영의 인쇄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<u>보관자</u>----- ----- ③----- -----<u>별지 제5호서식</u>----- -----</p>	<p>○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춰 용어 순화함.</p> <p>○ 서식 순번 정비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제16조(규칙)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6조(준용)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</p> <p>제17조(규칙)----- -----</p>	<p>○준용 규정을 두어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</p>

[별표 1]

## 공인의 규격(제4조 관련)

(단위: 센티미터)

공인의 구분	크 기		개정사유
	개정안	당초	
1. 군수 직인	<b>3.0</b> 정사각형	2.1 정사각형	※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5조 개정사항 반영
2.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(보조기관 포함)			
가. 4급 내지 5급 공무원을 보하는 직위	<b>2.4</b> 정사각형	2.1 정사각형	
나.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보하는 직위	<b>2.1</b> 정사각형	1.8 정사각형	
3.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직인 (하부조직의 장 포함)	<b>1.8</b> 정사각형	1.6 정사각형	
4.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			※ 「지방재정 법」 제91조 개정사항 반영: 경리관 ⇒재무관, 채무관리관 ⇒부채관리관
가. 징수관 <u>재무관</u> 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 <u>부채관리관</u> 지출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	2.0 정사각형	2.0 정사각형	
나. 출납원(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)	1.8 정사각형	1.8 정사각형	
5. 합의제기관의 공인			
가. 합의제기관의 청인	<b>3.6</b> 정사각형	2.1 정사각형	
나.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	<b>3.0</b> 정사각형	2.0 정사각형	

[별표 2]

## 공인의 보관자(제13조 관련)

공인의 구분	<u>보관자</u>
군수 직인	공인업무담당의 장
전자이미지 공인	공인업무담당의 장
민원전용 군수 공인	민원업무담당의 장
소속기관의 장의 직인	소관업무담당의 장
보조기관의 직인	소관업무담당의 장
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	소관업무담당의 장
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	소관업무담당의 장

# 관계법령

## □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16.4.26.] [대통령령 제27103호, 2016.4.26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적용범위)**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(軍)의 기관(이하 "**행정기관**"이라 한다)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5조(규격)**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**제40조(공인)**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별표]

### 관인의 규격(제35조 관련)

(단위: cm)

구분		길이
청인	국무회의	5.4
	그 밖의 합의제기관	3.6
직인	대통령	4.5
	국무총리	3.6
	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	3

비고: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,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.

## □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

[시행 2014.11.19.] [행정자치부령 제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**제28조(관인의 내용)**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국민이 쉽고 간명



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"인" 또는 "의인" 글자를 붙인다. 다만,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(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)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16.1.1.] [법률 제13638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**제9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**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  
[전문개정 2011.8.4.]

##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

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「88올림픽고속도로(담양-성산간)확장공사, 거창군12차」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. 04. 21.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·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.

2016. 06. 23.

## 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88올림픽고속도로(담양-성산간)확장공사, 거창군 12차
2. 사업 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
3. 공 고 내 용 : 재결서정본 송달

재결일 : 2016. 04. 21.

4. 공 고 기 간 : 2016. 6. 23. ~ 2016. 7. 7. (15일간)
5.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: 거창군청 건설과 (☎055-940-3534)

【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】

6. 공시송달 대상자 : 불임참조

[붙임]

1. 공시송달 대상자

번호	성명	송달주소	재결일
1	신경범	대구 남구 대명로***	2016.04.21
2	신준범	경북 칠곡군 서중리5길***	2016.04.21
3	윤석우	-	2016.04.21
4	변원호	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***	2016.04.21
5	원판수	대구 수성구 매호동 ***	2016.04.21
6	신기성	경기 광명시 하안로 ***	2016.04.21
7	이도권	거창군 가조면 동례리***	2016.04.21
8	이일룡	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***	2016.04.21
9	이영진	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***	2016.04.21
10	이채식	경남 거제시 장평1로***	2016.04.21
11	김준수	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***	2016.04.21

## ‘16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를 위한 행정 예고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6월 21일

### 거 창 군 수

1. 행정예고명 : 거창군 ‘16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를 위한 행정예고
2. 시 행 청 : 경상남도 거창군청
3. 행정예고기간 : 2016. 6. 21. ~ 2016. 7. 11.(20일간)
4. 의견제출기간 : 2016. 6. 21. ~ 2016. 7. 11.(20일간)
4. 행정예고(공고)방법 : 거창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
5. 관련근거
  -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
  -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
  -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
 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 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## 6. 주요내용

- 지정 · 고시목적 :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, 관리로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확보
- '16년 신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· 고시 현황

(단위 백만원)

등급	위치	저수지명	정밀안전진단 결과	소요예산	비고
계				4,285	
D (미흡)	남하면 무릉리	월곡3호	- 제당누수 - 사면 불안정 - 제체 부등침하	200	
E (불량)	마리면 영승리	장백	- 홍수배제능력 부족 - 저수지제당 쇄굴 - 제당누수	285	
D (미흡)	마리면 말흘리	진산	- 여유고부족 - 제당침식, 누수 - 측벽월류 발생	1,000	
D (미흡)	북상면 갈계리	갈계	- 여유고 부족 - 제당침식, 누수 - 토사퇴적 및 식생	500	
D (미흡)	마리면 월계리	토점	- 여유고 부족 - 제당침식, 누수 - 토사 퇴적	1,300	
D (미흡)	마리면 고학리	고신	- 사면침식 - 제당누수 - 여유고 부족	1,000	

## 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건설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 기타 필요사항 등

다. 제출방법

○ 우편 :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건설과

○ 팩스 : 055-940-3529

라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마. 문 의 처 :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(☎ 055-940-3541~3545)

## 주 민 의 견 제 출 서

행정예고명	거창군 '16년 신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 행정예고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주민(법인) 등록번호
	주 소		전화번호
설치예정위치	의견제출 내용		
<p>거창군 '16년 신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 출 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			
거 창 군 수 귀 하			

# 월곡3호 저수지

□ 위치도





# 장백 저수지

□ 위치도



# 진산 저수지

□ 위치도



# 갈계 저수지

□ 위치도



# 토점 저수지

□ 위치도



# 고신 저수지

□ 위치도



##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『환경개선비용부담법』 제9조에 의거 2016년 상반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·수취인 미거주·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국세기본법』 제11조, 『지방세기본법』 제33조 제2항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6년 6월 22일

### 거창군수

1. 제 목 : 2016년 상반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
2. 관련법규
  - 가. 『환경개선비용부담법』 제9조
  - 나. 『국세기본법』 제11조
  - 다. 『지방세기본법』 제33조 제2항
  - 라.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
3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붙임 참조
4. 공고기간 : 2016. 6. 22. ~ 2016. 7. 6. (15일간)
5.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국세기본법』 제24조 및 『지방세기본법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